

NAJU  
*Web  
Contents*

2022년 01월 17일 16시 39분

# 목차

목차	2
금연사업	3
금연클리닉 운영	3
목적	3
사업대상	3
사업기간	3
장 소	3
사업내용	3
추후관리	3
이동식 금연클리닉 운영	3
사업대상	3
장 소	4
사업내용	4
추후관리	4
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	4
사업대상	4
기 간	4
내 용	4
공중이용시설 지도 및 점검 실시	4
대 상	4
기 간	4
내 용	5
금연 캠페인 및 홍보	5
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	5
기 간	5
내 용	5
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	5
목적	5
대상범위	5
지정구역	5
지정조건	5
신청절차	5
제출서류	6
금연 상담안내	6

## 금연클리닉 운영

### ▶ 목적

흡연자 상담, 교육, 치료 등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금연자로서 건강한 생활 영위

---

### ▶ 사업대상

청소년, 여성, 성인, 노인 등 나주시 지역주민 흡연자 중 금연 결심자 및 희망자

---

### ▶ 사업기간

연중

---

### ▶ 장소

나주시보건소 2층 금연상담실,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

---

### ▶ 사업내용

- 등록 및 상담
  - 니코틴 검사, 일산화탄소 측정 등
  - 금연 보조제 지급(니코틴 패취, 니코틴 껌 등)
  - 행동 강화물품 지급
- 

### ▶ 추후관리

- 2~6회 상담 및 교육
  - 니코틴 검사, 일산화탄소 측정
  -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
  - 금단증상 관리, 6개월 이상 금연 유지 시 성공물품 지급
- 

## 이동식 금연클리닉 운영

### ▶ 사업대상

관내 사업장 중 희망기관 및 시설 10인 이상 흡연자

---

## 장 소

사업장 내 상담 가능한 곳

---

## 사업내용

- 금연교육, 일산화탄소 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
  - 흡연자 금연결심유도 및 등록 진행, 금연상담, 교육 실시
  - 금연 보조제 지급(니코틴 패취, 니코틴 껌 등)
  - 고지혈증 검사, 폐 나이 측정 등 기초건강검사 실시
- 

## 추후관리

- 주 1회 총 4회 운영(적극성, 참여율 등 고려 후 추가 신청 가능)
  - 금단증상 관리, 6개월 이상 금연 유지 시 성공물품 지급
- 

#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

## 사업대상

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, 직장인, 복지관 등 희망기관

---

## 기 간

연중

---

## 내 용

- 금연의 중요성, 필요성 알림
  - 간접흡연의 폐해, 흡연의 심각성, 인식변화 유도
  -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및 금연 방법 등
- 

# 공중이용시설 지도 및 점검 실시

## 대 상

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근거한 구역 등

---

## 기 간

연중

---

## ▶ 내용

- 금연구역 지정 관리 및 유지 미준수 관리자, 시설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
- 금연구역 내 흡연자(전자담배 포함) 10만원 과태료 부과

## 금연 캠페인 및 홍보

### ▶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결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

## ▶ 기간

연중

## ▶ 내용

- 금연 어깨띠, 피켓을 이용한 거리 홍보 캠페인 실시
- 금연 리플릿, 소책자, 각종 홍보물 배부
- 현수막, 배너, 교구 등 이용한 금연 홍보

##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

### ▶ 목적

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

### ▶ 대상범위

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

### ▶ 지정구역

공동주택 내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

### ▶ 지정조건

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

### ▶ 신청절차

신청서 등 보건소 제출 → 접수 후 세대주 동의 진위여부 확인 및 검토 → 지정공고

(<http://www.naju.go.kr>)

## 제출서류

-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
-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(해제) 신청서
- 금연구역지정(해제)동의서(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서류만 해당)
-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서류
-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의 내역서류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※ 신청서 등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

## 금연 상담안내

- 건강증진팀 : 061-339-2135
- 금연클리닉 : 061-339-2152, 2168

COPYRIGHT © NAJU-SI. ALL RIGHTS RESERVED.

NAJU

# ***Web Contents***

